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60호 2018. 07. 04.(수)

조 례

○ 사천시 조례 제1482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2

회 람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60호(2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482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7월 4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위원회”를 각각 “행정관광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행정국”을 “행정복지국, 산업관광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산업건설위원회”를 “건설항공위원회”로 하고, “산업건설국”을 “건설도시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